

과세기간	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	성명	
		주민등록번호	

※ 본 서식은 국외원천소득(결손)이 발생한 각 국가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.

1. 국외원천소득(결손) 발생국가

① 국가명		② 국가코드		
-------	--	--------	--	--

2. 공제한도 계산

(단위 : 원)

구분		금액
③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차감 전 국외원천소득		
④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 등		
⑤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(③ - ④)		
감면되는 국외원천소득	⑥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적용대상금액	
	⑦ 감면비율	
	⑧ 차감되는 감면 국외원천소득(⑥ × ⑦)	
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(⑤ - ⑧)		
⑩ 기준 국외원천소득(결손국가가 없는 경우=⑨, 있는 경우 작성방법 참조)		
공제한도	⑪ 종합소득 산출세액 (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)	
	⑫ 종합소득금액 (또는 퇴직소득금액)	
	⑬ 공제한도(⑪ × ⑩ / ⑫)	
당기 공제 대상세액	⑭ 전기 이월액	
	⑮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	
	⑯ 당기 공제대상 세액 (⑭ + ⑮)	
이월배제액	⑰ 한도초과액(⑯ - ⑬, 음수인 경우 영(0))	
	⑱ 이월배제 대상 외국납부세액	
	⑲ 이월배제 외국납부세액(⑰과 ⑱ 중 작은 금액)	
⑳ 차기 이월액(⑯ - ⑬ - ⑲, 음수인 경우 영(0))		

3. 공제세액 계산

(단위 : 원)

과세기간	② 당초 외국 납부세액 발생액	③ 전기 누적 공제액	④ 당초 이월 배제액	⑤ 당기 공제대상 세액 (②-③-④=⑥)	⑥ 당기 실제 세액공제액 (합계≤⑬)	⑦ 이월배제액 (⑱)	⑧ 차기이월액 (⑤-⑥-⑦)
당기							
합계							

작성 방법

1. 이 서식은 「소득세법」 제57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작성하며,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모든 국가(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국가 포함)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합니다.
2. '1. 국외원천소득(결손) 발생국가' 의 ① 국가명란에는 국외원천소득(결손)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② 국가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(ISO)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.
3. ③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차감 전 국외원천소득란은 국가별 종합 합산과세 되는 소득(분리과세되는 이자·배당·주택임대·기타소득 등 제외)을 기재합니다.
4. ④ 국외원천소득(분리과세되는 이자·배당·주택임대·기타소득 등 제외)에 대응하는 비용 등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17조제2항에 따른 직접비용 및 배분비용을 의미합니다.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계산명세는 세무당국이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.
근로(연금)소득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외근로(연금)소득에 대응되는 근로(연금)소득공제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.
5. ⑤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란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2 '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상' ⑥ 국외원천소득의 국가별 합계를 기재합니다.
6. ⑥ 국외원천소득 중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등에 따른 감면적용대상금액란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연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을 적습니다.
7. ⑦ 감면비율란에는 세액연제의 경우 100%,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감면비율을 적습니다.
8. ⑧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은 ⑤에서 ⑥을 차감하여 기재합니다. 음수인 경우(즉 국외소득이 결손인 경우)에도 음수를 그대로 적고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에는 영(0)을 기재합니다.
9.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은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있는 경우 아래 계산방식을 참고하여 기재하고,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없는 경우에는 '⑧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'을 그대로 적습니다.(종합소득세 과세표준 400 에 대하여 산출세액 120 가정).

<기준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예시>

국가별	외국납부세액	국별소득	⑩ 기준 국외원천소득	세액공제 한도액	비 고
A국	100	500	$500 - (600 \times \frac{500}{1,000}) = 200$	$120 \times \frac{200}{400} = 60$	산출 세액 120
B국	0	△600	0	0	
C국	60	300	$300 - (600 \times \frac{300}{1,000}) = 120$	$120 \times \frac{120}{400} = 36$	
국내	-	200	-	-	
계	160	△600 1,000	320	96	

10.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'⑩ 기준 국외원천소득'은 '⑩ 종합소득금액(또는 퇴직소득금액)'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11. ⑬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2 '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'상 '⑦ ~ ⑧ 외국납부세액'의 국가별 합계를 기재 합니다.
12. ⑭ 이월배제 대상 외국납부세액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17조제10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소득세액을 의미합니다.
13. ⑮ 과세기간란은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중 외국납부세액이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분부터 차례로 적고,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을 ⑮ 당초 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에 기재합니다. (201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이월공제를 10년간 적용합니다)
14. ⑯ 전기 누적 공제액란은 직전 과세기간까지 이미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누계로 기재합니다.
15. ⑰ 당초 이월배제액란은 외국납부세액 발생 과세기간의 이월배제액 계산금액을 각각 기재합니다.
16. ⑱ 당기 공제대상 세액란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잔액을 적되,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17조제10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소득세액 및 이월공제기간을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.
17. ⑲ 당기 실제세액공제액란에는 ⑱ 공제 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⑱ 당기 공제대상 세액 중 해당분을 차례대로 기재합니다.